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

의안 번호	312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8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5. 8. 14. 시행)으로 AIDT(디지털교과서)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에도 교육자료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 이용을 승인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존 AIDT 예산은 ‘(정책사업) 교육복지’에 편성하였으나,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 이용 필요
 - ※ (정책사업) 교육복지 ⇒ 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
- 예산 이용을 통해 2025. 2학기에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지원

< 이용 내역 >

(단위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구분	예산액 (A)	이용증감 (B)	소계 (C=A+B)
정책 사업	단위 사업	세부 사업	편성목				
교육복지	교육복지 지원	교과서지원	운영비 (210)	감	101,176,353	△1,914,282	99,262,071
교수학습 활동지원	학교정보화	ICT활용 교육지원	학교회계전출금 (620)	증	11,939,000	1,914,282	13,853,282

3. 참고사항 :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, 제29조의2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용[안]

□ 배경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5. 8. 14. 시행)으로 AI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
- 기존 AIDT 예산은 ‘(정책사업) 교육복지’에 편성되었으나,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이용 필요
※ (정책사업) 교육복지 ⇒ 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

❖ 예산의 이용: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

□ 법적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
-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□ 이용 내역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구분	예산액 (A)	이용증감 (B)	소계 (C=A+B)	비고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				
교육복지	교육복지지원	교과서지원	운영비 (210)	감	101,176,353	△1,914,282	99,262,071	
교수학습활동지원	학교정보화	ICT활용교육지원	학교회계전출금 (620)	증	11,939,000	1,914,282	13,853,282	공립 1,548,796천원 사립 365,486천원

- * 2025학년도 AIDT(교과서) 선정 학교 중 연간 단위 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2학기 사용분(총 계약금액의 50%)에 해당하는 예산(1,914,282천원)을 이용 신청